

#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 2. 제안이유

-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출향인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확대하고,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 및 G-푸드 판매로 구미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 홍보를 통해 구미시 이미지 제고와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사 무 명 :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필요성 : 출향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 G푸드 판매로 지역 홍보 및 매출 확대를 도모하며, 산업·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시정 홍보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 사무 내용 :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업무 전반
  -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및 운영
  -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행사 전반에 관한 사전 준비 및 진행
  - 사전판매 시스템 구축 및 예약 접수
-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 위탁기간 : 2026. 4. ~ 12.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9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행사운영비	과제추진비	간접비	비고
290	235	11	44	

-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6.2.25.)
-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4. 부서의견

-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5.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 6. 검토의견

### ○ 본 동의안은

- 서울시청 광장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구미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 검토 결과,

- 로컬푸드 홍보와 더불어 우리 시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방위산업 클러스터, 대표 축제인 구미 라면축제, 그리고 주요 관광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구미'의 우리 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적 홍보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사를 통해 발굴된 출향인 및 관계인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 이벤트 참여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나 지역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속적인 소통 채널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다만, 현재 수탁 기관으로 행사 기획 및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코이)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업의 본질이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먹거리 전략에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먹거리통합센터'로 사업 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